'e편한세상 오션테라스' 입주자 모집공고(E2블록)

■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7.07.13(목) 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 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본 아파트는 주택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2017.07.03)이 적용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15년 7월 29일 부산광역시 [주택의 우선 공급대상 지정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 2015-286호)]에 의거하여,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2017.04.13 이전부터 계속거주)에게 우선공급하며, 청약접수 시 거주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지역 :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관광특구 6.2㎢제외),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기장군)
- 동일순위 청약자(특별공급, 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중 경쟁이 있는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부산광역시) 3개월 이상 거주 청약자가 우선하며 부산광역시 3개월 미만 거주 청약자,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 청약자는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주택형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85㎡초과 주택은 100% 추첨제로 선정 함)
※ 본 아파트는 청약조정대상 주택으로 1순위 접수 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함(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 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거하여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만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적용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1순위 자격제한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포함) : 세대주가 아닌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자 (전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1순위 청약 불가 함(2순위로 청약가능)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및 과거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공급하는 주택과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 규칙제3조제2항 각호(제3호,제5호,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에 따른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
※ 재당첨 제한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3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1년
※ 청약 조정대상지역 : 서울시 · 경기도 과천시 · 성남시 · 광명시 – 모든주택 / 하남시 · 고양시 · 남양주시 · 화성시(동탄2에 한함) – 공공택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연제구 · 동래구 · 남구 · 수영구 · 부산진구–민간택지, 기장군 - 민간,공공택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 공공택지
※ 과거 당첨사실 조회 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또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 제한기간 강화 : 당첨일로부터 3개월 → 당첨일로부터 1년 연장 -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의 2순위 접수방법 변경 : 청약신청금 → 청약통장으로 신청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5.02.27)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분양권 전매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단, 계약금을 모두 완납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조정 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4조의 재당첨 제한 기준 규정이 적용되며, 기분양주택의 당첨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 됩니다.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전매제한기간 조정 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기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나 청약 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에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특별·일반공급)시 최하층을 희망하는 때에는 우선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고령자세대 및 장애인세대의 신청자가 3명 이상 미성년자녀의 세대보다 우선합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본 아파트는 최저층이 2층인 주택형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 후 청약신청 하시기 바람)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16.12.3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의거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금을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모델하우스 (www.samhoapt21.co.kr) 를 운영하오니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사이버모델하우스만을 관람하고 청약 시 경우에 따라서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동안 실제 견본주택을 방문해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착오에 따른 불이익 발생시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아파트의 도면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과-35338호(2017.07.1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공급대상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13-8번지 일원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E2블록)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2층, 지상21~26층 아파트 4개동 29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대지면적 8,996.5000㎡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세대당 주택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	공급세대수							최하층 배정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공급면적			공용면적				특별공급					일반 공급	계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계	기타 공용	주차장	계약 면적		일반	다자녀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이전 기관				
민영주택	1단지	2017000871-01	84.9275A	84.9275	25.5506	110.4781	2.9254	42.4203	155.8238	27.5127	8	8	8	2	8	49	83	4	2020년 01월
		2017000871-02	84.9776B	84.9776	24.6832	109.6608	2.9271	42.4453	155.0332	27.5289	9	9	9	2	9	54	92	4	
		2017000871-03	91.9754A	91.9754	25.1952	117.1706	3.1682	45.9407	166.2795	29.7959	0	4	0	1	4	31	40	2	
		2017000871-04	114.9320B	114.9320	32.2797	147.2117	3.9590	57.4072	208.5779	37.2328	0	7	0	2	7	63	79	4	
		계									17	28	17	7	28	197	294	14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면적합산 시 소수점 5자리 이하에 대해 반올림 값이 적용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택 공급 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 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 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기계·전기실 등 공용면적 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과 팜플렛 등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오니,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일반 공급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각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주택형에 대하여만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청약신청을 하더라도 무효 처리 됨

공급금액 (1단지)

(단위 : ㎡ / 원 / 85㎡ 초과 주택형은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	해당동	일반분양 공급 세대수		층별 구분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2차 17.09.07	1회차 18.02.15	2회차 18.07.13	3회차 18.10.15	4회차 19.02.15	5회차 19.06.14	6회차 19.09.13	입주지정기간내 (입주일)
84.9275A	101동 3호 102동 1호 103동 4호 104동 1호	83	4	2층	143,975,154	217,124,846	361,100,000	10,000,000	26,110,000	36,110,000	36,110,000	36,110,000	36,110,000	36,110,000	36,110,000	108,330,000
			4	3층	143,975,154	229,124,846	373,100,000	10,000,000	27,310,000	37,310,000	37,310,000	37,310,000	37,310,000	37,310,000	37,310,000	111,930,000
			4	4층	143,975,154	233,124,846	377,100,000	10,000,000	27,710,000	37,710,000	37,710,000	37,710,000	37,710,000	37,710,000	37,710,000	113,130,000
			4	5층	143,975,154	241,224,846	385,200,000	10,000,000	28,520,000	38,520,000	38,520,000	38,520,000	38,520,000	38,520,000	38,520,000	115,560,000
			20	6~10층	143,975,154	249,224,846	393,200,000	10,000,000	29,320,000	39,320,000	39,320,000	39,320,000	39,320,000	39,320,000	39,320,000	117,960,000
			20	11~15층	143,975,154	257,224,846	401,200,000	10,000,000	30,120,000	40,120,000	40,120,000	40,120,000	40,120,000	40,120,000	40,120,000	120,360,000
			19	16~20층	143,975,154	265,224,846	409,200,000	10,000,000	30,920,000	40,920,000	40,920,000	40,920,000	40,920,000	40,920,000	40,920,000	122,760,000
			8	21층이상	143,975,154	277,324,846	421,300,000	10,000,000	32,130,000	42,130,000	42,130,000	42,130,000	42,130,000	42,130,000	42,130,000	126,390,000
84.9776B	101동 1호 102동 3호 103동 1호 104동 4호	92	4	2층	144,059,929	214,340,071	358,400,000	10,000,000	25,840,000	35,840,000	35,840,000	35,840,000	35,840,000	35,840,000	35,840,000	107,520,000
			4	3층	144,059,929	226,240,071	370,300,000	10,000,000	27,030,000	37,030,000	37,030,000	37,030,000	37,030,000	37,030,000	37,030,000	111,090,000
			4	4층	144,059,929	230,240,071	374,300,000	10,000,000	27,430,000	37,430,000	37,430,000	37,430,000	37,430,000	37,430,000	37,430,000	112,290,000
			4	5층	144,059,929	238,240,071	382,300,000	10,000,000	28,230,000	38,230,000	38,230,000	38,230,000	38,230,000	38,230,000	38,230,000	114,690,000
			20	6~10층	144,059,929	246,140,071	390,200,000	10,000,000	29,020,000	39,020,000	39,020,000	39,020,000	39,020,000	39,020,000	39,020,000	117,060,000
			20	11~15층	144,059,929	254,140,071	398,200,000	10,000,000	29,820,000	39,820,000	39,820,000	39,820,000	39,820,000	39,820,000	39,820,000	119,460,000
			20	16~20층	144,059,929	262,140,071	406,200,000	10,000,000	30,620,000	40,620,000	40,620,000	40,620,000	40,620,000	40,620,000	40,620,000	121,860,000
			16	21층이상	144,059,929	274,040,071	418,100,000	10,000,000	31,810,000	41,810,000	41,810,000	41,810,000	41,810,000	41,810,000	41,810,000	125,430,000
91.9754A	103동 3호 104동 2호	40	2	2층	155,923,238	215,476,762	371,400,000	10,000,000	27,140,000	37,140,000	37,140,000	37,140,000	37,140,000	37,140,000	37,140,000	111,420,000
			2	3층	155,923,238	227,876,762	383,800,000	10,000,000	28,380,000	38,380,000	38,380,000	38,380,000	38,380,000	38,380,000	38,380,000	115,140,000
			2	4층	155,923,238	231,976,762	387,900,000	10,000,000	28,790,000	38,790,000	38,790,000	38,790,000	38,790,000	38,790,000	38,790,000	116,370,000
			2	5층	155,923,238	240,276,762	396,200,000	10,000,000	29,620,000	39,620,000	39,620,000	39,620,000	39,620,000	39,620,000	39,620,000	118,860,000
			10	6~10층	155,923,238	248,476,762	404,400,000	10,000,000	30,440,000	40,440,000	40,440,000	40,440,000	40,440,000	40,440,000	40,440,000	121,320,000
			10	11~15층	155,923,238	256,776,762	412,700,000	10,000,000	31,270,000	41,270,000	41,270,000	41,270,000	41,270,000	41,270,000	41,270,000	123,810,000
			10	16~20층	155,923,238	265,076,762	421,000,000	10,000,000	3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126,300,000
			2	21층이상	155,923,238	277,376,762	433,300,000	10,000,000	33,330,000	43,330,000	43,330,000	43,330,000	43,330,000	43,330,000	43,330,000	129,990,000
114.9320B	101동 2호 102동 2호 103동 2호 104동 3호	79	4	2층	194,840,859	248,559,141	443,400,000	10,000,000	34,340,000	44,340,000	44,340,000	44,340,000	44,340,000	44,340,000	44,340,000	133,020,000
			4	3층	194,840,859	263,359,141	458,200,000	10,000,000	35,820,000	45,820,000	45,820,000	45,820,000	45,820,000	45,820,000	45,820,000	137,460,000
			4	4층	194,840,859	268,259,141	463,100,000	10,000,000	36,310,000	46,310,000	46,310,000	46,310,000	46,310,000	46,310,000	46,310,000	138,930,000
			4	5층	194,840,859	278,159,141	473,000,000	10,000,000	3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141,900,000
			20	6~10층	194,840,859	287,959,141	482,800,000	10,000,000	38,280,000	48,280,000	48,280,000	48,280,000	48,280,000	48,280,000	48,280,000	144,840,000
			20	11~15층	194,840,859	297,859,141	492,700,000	10,000,000	39,270,000	49,270,000	49,270,000	49,270,000	49,270,000	49,270,000	49,270,000	147,810,000
			12	16~20층	194,840,859	307,759,141	502,600,000	10,000,000	40,260,000	50,260,000	50,260,000	50,260,000	50,260,000	50,260,000	50,260,000	150,780,000
			11	21층이상	194,840,859	322,459,141	517,300,000	10,000,000	41,730,000	51,730,000	51,730,000	51,730,000	51,730,000	51,730,000	51,730,000	155,190,000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확장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임. 별도계약품목(추가선택 옵션)은 분양계약자가 선택계약하는 사항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 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 사항임.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총 대지지분과 세대별 대지지분 합계와의 차이분은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 시 일부 특정세대(101동 201호, 201동 201호, 301동 201호, 401동 201호)에 포함시켜 등기함.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 (2차 계약금 및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공지 및 안내예정임.
※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받는 것에 동의하며(개별금융기관지정 불가함),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아니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특히 청약 접수 전 본인의 신용상태 및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대출금액, 대출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시행위탁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 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 (이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시 연체료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상기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층별,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층별,호별로 구분 됨.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은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 함.
※ 입주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 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함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인 자가 분양을 받을 시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외국인 토지취득(허가) 신고를 하여야 함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통사항
· 신청 및 당첨자 선정 일시 · 장소

구분		일시	장소
특별공급 신청	일반,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	2017.07.18(화) (10:00 ~ 14:00)	e편한세상 오션테라스 견본주택 방문신청 * 일반인 입장 불가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신청	2017.07.18(화) (09:00~17:30) ~2017.07.19(수) (09:00 ~ 16:00)	한국주택협회 홈페이지 (www.housing.or.kr)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일반,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발표	2017.07.19(수) (16:00)	e편한세상 오션테라스 견본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발표	2017.07.19(수) (19:00)	한국주택협회 홈페이지 (www.housing.or.kr)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체될 경우 당첨자 선정 시간이 다소 지연 및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해당 청약일정 일시에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하여야 함
·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사항
-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동호수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0조 5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계약체결일 :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과 동일(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참조)
·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내 무주택 세대구성원(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청약 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 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필요)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 세대주 요건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세대원 (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이루고 있는 사람
· 청약자격 요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무주택 세대구성원 (단, 노부모 부양에 대한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6조 1항 2호에 의거 세대주에 한정 함)
② 부산광역시 3개월 이상 거주자가 우선 공급대상 임, 단 이전기관 종사자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7조에 의거 함
- 특별공급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제외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은 제외)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단, 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는 폐지되었음을 참고바랍니다 (2017.4.3.모집공고부터)
-이전기관 종사자 등의 특별공급 신청자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7조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 특별공급 운영기준」 제 8조에 의한 대상자 ② 청약통장 가입요건에서 제외 함
·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의 전매제한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은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7.08.07)로부터 3년 동안 전매가 금지됨을 유의하시기 바람. 단, 그 기간(3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봄
· 특별공급 유의사항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므로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1세대내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 과거 재당첨 제한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또는 "청약조정 대상지역"에서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 57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및 "청약조정 대상지역"에서 재당첨 제한 기간내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등 부적격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당첨시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분은 무효처리 함
-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 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하고,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따른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또는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이자는 별도 지급되지 않음
- 본인이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당첨시 모두 무효처리함 - 특별공급 신청 이후에는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취소나 정정할 수 없음
-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청약접수시 무주택서약서 작성으로 무주택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하며, 당첨자의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무주택 입증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 · 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과 일괄하여 실시함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제외)
- 부적격 당첨자 관리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단, 당첨자 명단 삭제 및 청약통장은 부활)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주택공급신청시 1층 우선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주택형의 1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단, 1층 우선 배정 신청자 간 경쟁이 있을 경우,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단, 1층이 없는 주택형은 최저층을 우선 배정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1층이 배정될 수 있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하여 해당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함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공급별 공급세대수

주택형(㎡)	84A	84B	91A	114B	합계
일반 특별공급(85㎡이하 10%)	8	9			17
다자녀가구 특별공급(건설량의 10%)	8	9	4	7	28
신혼부부 특별공급(85㎡이하 10%)	8	9			17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건설량의 3%)	2	2	1	2	7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건설량의 10%)	8	9	4	7	28
소계	34	38	9	16	97

▶ 일반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 : 총 17세대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건설 공급량의 10% 이내)
· 대상자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07.13)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 또는 해당기관장이 인정하는 서류를 받으신 분
※ 관련법에 의한 장기복무 군인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으로서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 철거민 : 당해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서 철거되는 주택을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 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는 날 이전부터 소유 및 거주한 자(대지와 건물의 소유가 같은 경우에 한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한다)
- 중소기업근로자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동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 대상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및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기타 :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도정시책 기여자로 선정하여 추천하는 자), 올림픽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 대회 3위 이상 입상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 10조에 따른 10년이상 복무한 군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등
·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및 해당 기관에서 확인서(추천서)를 발급 받은자 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 - [미신청 시 당첨자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거주 신청자가 타 지역 거주 신청자 보다 우선하며, 타 지역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0조 : 총 28세대 / 주택건설 공급량의 10% 이내)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74호(2015.12.29)]에 따라 기존의 '3자녀 이상 특별공급'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으로 개정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어 있지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73호(2016.12.13.)」 참고하시기 바람
· 대상자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7.13)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또는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자로서 민법상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서 정하는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요건을 갖춘 자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자녀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증명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 및 입양자녀도 포함됨(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입양자녀임을 입증하여야 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73호(2016.12.13.))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거주 신청자가 광역권(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 신청자 보다 우선함.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또는 광역권(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배점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검색 또는 확인한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 · 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기재)

배점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65			
미성년 자녀수(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임신중에 있는 태아, 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2)	10	자녀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공급신청자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름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공급신청자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 · 도 거주기간(5)	20	10년 이상	20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봄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 가족증명서로 확인 /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적용 및 국토교통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 저축가입 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1조 : 총 17세대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건설 공급량의 10% 이내)
· 대상자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7.13)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또는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중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서 정하는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요건을 갖춘 자 [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소득기준
※ 전년도(2016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통계청 고시)

구분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평균소득(통계청 고시)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884,448원 이하	5,630,275원 이하	5,596,595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5,816,338원 이하	6,756,330원 이하	6,715,914원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여야 함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청약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의 사람 포함) 전원임.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함)을 근무월수(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로 나눈 금액으로 함
- 가구원수는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의 사람 포함)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로 인정됨 2010년부터는 '6인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에 대해서는 통계자료를 발표하지 않은 관계로 '6인 이상 가구'도 5인 이상 월평균 소득이 적용됨
- 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를 통계청에서 발표하기 전에는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함.
※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638호, 2015.12.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해당직장, 세무서
	신규취업자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직장가입자만 해당)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 날인) 또는 직인 날인된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조서)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신규사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 급여명세표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 지급조서(직인날인)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해당직장
무직자		무직자 사실증명원, 비사업자 확인 각서(접수장소에 비치)	세무서, 접수장소

· 입주자 선정방법
-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①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 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 이하 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자
②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함) 수가 많은 자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함) 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2순위자로 인정되나, 동일순위 안에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함
· 기타 유의사항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함
- 입주전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공급계약)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분양권 전매 요청시 입양자격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사업주체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 요청을 접수함]
- 임신의 경우 서류 제출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분양권 전매 요청시 임신자격이 유지(또는 출산)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신자격이 유지(또는 출산)되고 있다고 사업주체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 요청을 접수함]
-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출산은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으로 판단하며, 양자 및 친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본인)의 직계존 · 비속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함 (단, 가구당 월평균 소득 산정시 임신중인 경우 태아는 태아수대로 산정)
- 가구당 소득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전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 · 비속)의 소득을 합산하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만 19세 이상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소득도 합산함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함
-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함
- 근무월수는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 및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 신고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함
- 신청자 명의로 사업자(법인)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사업소득이 법인인감이 날인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액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6조 : 총 7세대 / 주택건설 공급량의 3% 이내)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7.13)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또는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함)으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되며, 신청시 그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1순위 청약제한이 적용되므로 다음 중 1에 해당되는 분은 신청이 불가함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2주택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로 봄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거주 신청자가 광역권(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 신청자 보다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의거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또는 광역권(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민영주택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함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따름
- 특별공급 청약신청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기준표를 작성토록 함(견본주택 비치)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74호(2015.12.29)]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6조 : 총 28세대 / 주택건설 공급량의 10% 이내)
· 신청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8조에 의한 대상자
① 당해 혁신도시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② 혁신도시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③ 당해 혁신도시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해당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단, 이전공공기관 제외)
④ 상기 ①, ②, ③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아래 해당하는 기관에 추천받는 자에 한함.
※ 부산광역시 이전 13개 공공기관 추천기관[문서번호 : 대외협력담당관 – 1853 (2017.03.09.)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남부발전(주),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 관리위원회
· 청약자격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 중 해당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소속직원의 특별공급대상자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주택 특별 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한 자
②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이 당해 혁신도시예정지역으로 이전 또는 설치한 날(지방이전계획승인일, 부지계약일 또는 건축 승인 후 착공일을 말한다)로부터 예정지구 등에 이전 또는 설치한 날(업무개시일 또는 법인등기일을 말한다)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근무하는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종사자만 해당하며, 파견자 및 휴직자 등 일시적으로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종사자의 경우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원소속 부서를 기준으로 특별공급대상 여부를 판단
③ 이전공공기관의 경우 상기 제②항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종사자는 지방이전계획상 이전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종사자(지방이전계획상 이전하는 부서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이전하는 부서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택특별 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이전하는 부서에 근무함을 확인하는 자를 포함한다)만 해당한다. 다만, 이전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지방이전계획상 잔류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하고, 잔류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지방 이전계획상 이전 대상 업무 담당하는 자는 포함
④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이 이전하는 지역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에 1년 이상 파견근무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택특별공급을 시행하는 지역의 관할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을 거쳐 파견된 지역에서 특별공급
⑤ 상기 제②항에 특별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에 근무하여야 하며,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소속직원의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해당 주택의 입주일(주택의 입주일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날 보다 빠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날을 말한다) 이전에 특별공급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됨
· 신청기간 : ① 인터넷 청약 기간은 2017.07.18.(화) 09:00~17:30, 2017.07.19.(수) 09:00~16:00 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② 인터넷 청약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후 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함
· 신청방법 : ①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 인터넷신청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한국주택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 하시기 바람
②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신청을 할 수 있음

> ▶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인터넷 신청방법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시스템 체험관 apt2.housing.or.kr)
> 한국주택협회 홈페이지(www.housing.or.kr)접속 → 메인화면의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시스템(apt2.housing.or.kr)"바로가기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에서
> 'e편한세상 오션테라스'선택 → "청약신청" 선택 →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확인 → 신청자 공인인증 → 서약서동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 신청자 공인인증 → 청약신청 완료

· 입주자 선정방법 : ① 인터넷 청약접수 방식을 제공하며, 입주대상자 모집결과 신청자간 경쟁이 있을 때에는 추첨을 통하여 입주자 선정
· 유의사항 : ① 주택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하며, 신청자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주택특별공급대상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가 분리되어도 주택특별 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
② 주택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당해 혁신도시예정지역에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을 받은 경우, 혁신도시예정지역에서 공급한 주택에 일반공급의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함
③ 「주택법 시행령」 제 73조 제1항의거 전매제한 기간은 최초 계약가능일로부터 3년간 전매가 제한 됨
단,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 함.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 특별공급 신청시에는 배우자의 신청도 본인 신청으로 갈음 함(특별공급 신청에 한하며, 계약시 구비서류는 배우자도 제3자 대리신청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		인감증명서	본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시는 제출 생략
	○		주민등록증	본인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
	○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 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www.apt2you.com)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주택소유여부에 대한 적격 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장애인 복지카드 등 기타 서류로 접수 불가) 국가유공자는 보훈청 관리명단으로 접수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청약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청약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
		○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 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존 · 비속의 소득입증서류) [표 소득증빙서류 참조]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		인감증명서	청약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장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받지 않음.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일반공급
▶ 공통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7.13)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또는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세대주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 존 · 비속인 세대원이 없어도 만19세 이상인 자는 단독세대주로 봄)
·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거주 신청자가 우선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은 비투기과열지구 내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과거 재당첨제한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기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주택에 청약이 제한됨
· 상기 주택에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됨.(2순위로 청약 가능)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입주자모집공고분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당첨자 발표일이 상이한 주택에 대하여 중복청약이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을 계약하여야 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청약 시 재당첨 제한 및 1순위 청약이 제한 됨
· 주택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되어,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75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한 1순위자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봄
▶ 일반공급 순위별 신청자격

구분	순위	신청구분	청약관련 예금 및 신청자격	거주구분
민영주택	1순위	85㎡ 이하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 가점제(40%) 및 추첨제(60%)적용 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2017.07.13)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해당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상남도
		85㎡ 초과	· 100% 추첨제임(※ 2주택이상인 자는 1순위 접수 불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2017.07.13) 현재 입주자 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한 자 중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해당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1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 (2순위로 청약 가능)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모든 청약 대상자) - 2주택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 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자격 제한 대상자	
		2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및 과거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접수 입력중이라도 접수 완료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노약자, 장애우 등 창구 청약 가능시간 : 은행별 영업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하며 2순위 접수는 청약자의 거래은행 창구에서 가능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국민, KEB하나,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신한은행
▶ 청약관련 예금 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전용면적 기준)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로 주택규모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청약 전까지 신청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정하는 규정은 폐지되었습니다(2017.04.03 이후)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당해지역 전입일 관련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당해지역으로 전입 시 당해 거주지역으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 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주택공급 신청서 상 단말기로 인지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청약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6.08.12)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가능함
▶ 청약가점제 적용안내
· 2007.09.01일부터 시행된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일정비율로 배분된 가점제 및 추첨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 / 감점점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 항목 및 접수 : 무주택기간(32점), 부양 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등 총점 84점
· 청약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입력은 청약자 본인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여 사전에 익히고 필요한 사항을 먼저 상담하시기 바람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외 세대원이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1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함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비고
① 무주택 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인 무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 이전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청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시 부양가족수 산정) - 가입자 본인은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 자동으로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계	84	본인청약 가점점수 = ①+②+③					

▶ 가점항목별 적용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단, 수도권의 경우 1억3천만원 이하)주택 (이하 "소형 · 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 · 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 위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봄.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 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부여함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3.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4.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6.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7.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 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 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인이 되어 있는 서류
8.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 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제11조의2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않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또는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 · 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전용면적 60㎡이하이며, 비수도권은 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단, 수도권의 경우 1억3천만원 이하)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 · 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① 현재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 · 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 · 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 · 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일반공급 청약신청 접수방법

▶ 공통
1. 입주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순위에 따름
2. 공통
· 순위별로 접수일정을 구분하여 층별, 동별, 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6.08.12) 따라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나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가 있는 경우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할 수 있음.(1층이 없는 경우 해당 주택형의 최저층) 최하층 우선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청약 신청접수시 1층 희망을 선택해 주시기 바람.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주택소유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청약신청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 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게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은행별 영업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하며, 2순위 접수는 청약자의 거래은행 창구에서 가능]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국민, KEB하나,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신한은행
·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한 후 청약 바람
·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셔야 함)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어 청약하시기 바람
※ 유효한 공인인증서를 이미 소유하신 고객은 추가발급 받으실 필요가 없으며 청약접수일 전에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고객께서는 미리 갱신발급하시기 바람
· 청약자격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 · 초본 등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군,도 단위) 전입일을 기재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신청시 청약신청자격 착오기재 등(수정 불가)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 및 청약접수 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은 불가함
▶ 일반공급 순위별 공급일정

구분	신청대상자	거주구분	신청접수일	청약방법	신청방법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부산광역시 거주	2017.07.20(목) 08:00 ~ 17:30	인터넷 청약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국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APT2you.com)
	1순위 기타지역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	2017.07.21(금) 08:00 ~ 17:30	인터넷 청약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2순위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2017.07.24(월) 08:00 ~ 17:30	인터넷 청약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1순위 청약일정 분리에 다른 유의사항
- "해당지역(부산)" 거주자는 "해당지역(부산)" 접수일에만 청약이 가능하며, "기타지역" 접수일에는 청약불가 (위반시 부적격 처리)
- "해당지역(부산)" 에 전입제한일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부산)" 거주자라 하더라도 전입제한일 이후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접수 (위반 시 부적격 처리)